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



심사유예신청(늦은심사)이란
무엇입니까?

-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 심사유예신청은 출원과
동시 심사청구시 특허출원서에, 출원 후 심사청구시 심사청구서에, 심
사청구 후 6개월이내 결정보류(심사유예)신청서에 취지를 기재하여 신
청할 수 있습니다. 심사유예신청은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
해야하며 유예희망시점은 심사청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심사청구
가능시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심사유예신청 제외 대상으로는
분할, 변경,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우선심사결정된 출원, 심사유예신
청이 있기 전 거절이유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가 있습니다.

결정계 심판 청구기간 연장이
가능한가요?

- 결정계 심판청구 기간은 2009. 1. 30 이후부터 누구든지 1회에 한하
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
자(재외자)의 경우 1회 2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이 기
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"기간연장(단축, 경과구제)신청서(법정기간
연장)"를 제출하고 수수료 20,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.

상표 우선심사란 무엇이며
어떻게 신청합니까?



- "우선심사"라 함은 「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: 심사의 순위」의 규정에
불구하고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
말합니다.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
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상표 우선심사제도
는 2009. 4. 1부터 시행되며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출원인이 출원한
상표를 지정상품, 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
이 명백한 경우와 출원인이 아닌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
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
심판청구인이 출원한 경우에 한하며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마다
160,000원입니다.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는 1상품류마
다 3만 원을 제외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